

신용카드 설명서 개정(안)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(안)	비고
<p><b>신용카드 설명서&lt;신 설&gt;</b></p> <p>민원을 제기하거나 상담을 요청하려는 경우 이용 가능한 연락처 (생략)</p> <p>당사 고객센터(1588-0079)를 통해 금융상품에 관한 문의가 가능하며, 분쟁 발생 시에는 금융감독원(국번없이 1332) 등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.</p> <p>(생략)</p> <p><b>2. 결제일자에 따른 대금납부일 등 신용카드 결제와 관련된 조건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회원은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결제일에 자동이체 결제방법 또는 <u>카드사</u>가 정하는 방법(즉시결제, 가상계좌 입금 등)으로 결제하여야 하며, 대금결제일은 결제가능일 중에서 회원이 정하는 날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.</li> <li>▪ <u>카드사</u>는 회원의 카드이용대금을 결제일에 자동이체 계좌에서 인출하여 결제하며 은행 영업 마감시간(16시) 이후에 입금된 금액은 결제계좌 개설 기관의 사정에 따라 자동인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</li> </ul> <p>(생략)</p>	<p><b>신용카드 설명서(개인회원용)</b></p> <p>민원을 제기하거나 상담을 요청하려는 경우 이용 가능한 연락처 (현행과 같음)</p> <p>(<u>제주은행(이하 "은행"이라고 함)</u> 고객센터(1588-0079)를 통해 금융상품에 관한 문의가 가능하며, 분쟁 발생 시에는 금융감독원(국번없이 1332) 등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.</p> <p>(현행과 같음)</p> <p><b>2. 결제일자에 따른 대금납부일 등 신용카드 결제와 관련된 조건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회원은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결제일에 자동이체 결제방법 또는 <u>은행</u>이 정하는 방법(즉시결제, 가상계좌 입금 등)으로 결제하여야 하며, 대금결제일은 결제가능일 중에서 회원이 정하는 날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.</li> <li>▪ <u>은행</u>은 회원의 카드이용대금을 결제일에 자동이체 계좌에서 인출하여 결제하며 은행 영업 마감시간(16시) 이후에 입금된 금액은 결제계좌 개설 기관의 사정에 따라 자동인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</li> </ul> <p>(현행과 같음)</p>	<p>금차 법인회원용 신용카드 설명서 분리 제정으로 인한 서식제목 변경</p> <p>문구 수정</p> <p>문구 수정</p> <p>문구 수정</p>

현행	개정(안)	비고
<p>3. 할부, 단기카드대출(현금서비스) 등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각종 수수료</p> <p>[카드 이용형태별 수수료율]</p> <p>(생략)</p> <p>단기카드대출(현금서비스) : <u>카드사가</u> 미리 부여한 한도(신용카드 이용한도의 최대 40%) 이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단기 금융서비스</p> <p>(생략)</p> <p>[해외이용 수수료율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<u>해외서비스</u> 수수료 : (생략)</li> </ul> <p>수수료율 : 0.3% ((거래미화금액* x <u>해외서비스</u> 수수료율) x 전신환매도율**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국제브랜드 수수료 : (생략)</li> </ul> <p>수수료율 : 1%~1.1%((거래미화금액 x <u>해외서비스</u> 수수료율) x 전신환매도율**)</p> <p>** 전신환매도율 : BC카드사 접수일의 전신환매도율을 적용</p> <p>[연체이자율(연)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연체이자율은 [회원별 · 이용상품별 약정이자율 + 연체가산이자율&lt;신설&gt;]로 적용합니다.</li> <li>· <u>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%로 최고 연 20%로</u> 합니다.</li> </ul> <p>(생략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일시불 거래를 연체하는 경우 : 거래 발생 시점 기준 최소 기간(2개월)의 유이자 할부 금리+<u>연체가산금리</u></li> <li>· 무이자 할부 거래를 연체하는 경우 : 거래 발생 시점 기준 동일한 할부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 금리+<u>연체가산금리</u></li> </ul> <p>(생략)</p>	<p>3. 할부, 단기카드대출(현금서비스) 등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각종 수수료</p> <p>[카드 이용형태별 수수료율]</p> <p>(현행과 같음)</p> <p>단기카드대출(현금서비스) : <u>은행이</u> 미리 부여한 한도(신용카드 이용한도의 최대 40%) 이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단기 금융서비스</p> <p>(현행과 같음)</p> <p>[해외 이용 수수료율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<u>해외 이용</u> 수수료 : (현행과 같음)</li> </ul> <p>수수료율 : 0.3% ⇒ (거래미화금액* x <u>해외 이용</u> 수수료율) x 전신환매도율**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국제브랜드 수수료 : (현행과 같음)</li> </ul> <p>수수료율 : 1%~1.1% ⇒ (거래미화금액 x <u>국제브랜드</u> 수수료율) x 전신환매도율**)</p> <p>** <u>카드 접수일자 기준, BC카드 결제대행은행에서 고시하는 전신환매도율을 적용</u></p> <p>[연체이자율(연)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연체이자율은 [회원별 · 이용상품별 약정이자율 + 연체가산이자율(연 3%)]로 적용합니다.</li> <li>· <u>연체이자율은 법정최고금리인 연 20% 이내로</u> 합니다.</li> </ul> <p>(현행과 같음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일시불 거래를 연체하는 경우 : 거래 발생 시점 기준 최소 기간(2개월)의 유이자 할부 금리+<u>연체가산금리</u></li> <li>· 무이자 할부 거래를 연체하는 경우 : 거래 발생 시점 기준 동일한 할부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 금리+<u>연체가산금리</u></li> </ul> <p>(현행과 같음)</p>	<p>문구 수정</p> <p>적용 수수료 명칭 변경</p> <p>적용 수수료 명칭 변경</p> <p>적용 수수료 명칭 변경</p> <p>적용 환율에 대한 설명 구체화</p> <p>연체가산이율 표시</p> <p>연체이자율 설명 구체화</p> <p>문구 삭제</p> <p>문구 삭제</p>

현행	개정(안)	비고
<p>4. 연회비 및 연회비 반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연회비 : 연회비는 <u>카드사</u>가 신용카드 발급, 이용대금명세서 발송 등 관리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기본연회비와 카드별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제휴연회비로 구성됩니다.</li> <li>연회비 청구 : <u>카드사</u>는 카드이용대금에 우선하여 연회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, 연회비는 신용카드 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1년 단위로 청구됩니다. 다만, 연회비 부과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카드에 대한 연회비는 청구하지 않습니다.</li> <li>연회비 반환 : 회원이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카드를 해지하는 경우 연회비 반환금액은 회원이 <u>카드사</u>와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일할 계산(하루 단위로 계산하며 회원이 카드이용이 가능하게 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)하여 산정합니다. 이 경우 회원이 이미 납부한 연회비에 반영된 다음 비용은 반환금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.</li> </ul> <p>(생략)</p> <p>5. 계약 해지 시 불이익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회원이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카드를 해지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연회비를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일할 계산(하루 단위로 계산)하여 그 금액을 차감하여 반환하며, <u>카드사</u>는 카드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날까지의 채무 전액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</li> </ul>	<p>4. 연회비 및 연회비 반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연회비 : 연회비는 <u>은행</u>이 신용카드 발급, 이용대금 명세서 발송 등 관리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기본연회비와 카드별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제휴연회비로 구성됩니다.</li> <li>연회비 청구 : <u>은행</u>은 카드이용대금에 우선하여 연회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, 연회비는 신용카드 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1년 단위로 청구됩니다. 다만, 연회비 부과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카드에 대한 연회비는 청구하지 않습니다.</li> <li>연회비 반환 : 회원이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카드를 해지하는 경우 연회비 반환금액은 회원이 <u>은행과</u>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일할 계산(하루 단위로 계산하며 회원이 카드이용이 가능하게 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)하여 산정합니다. 이 경우 회원이 이미 납부한 연회비에 반영된 다음 비용은 반환금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.</li> </ul> <p>(현행과 같음)</p> <p>5. 계약 해지 시 불이익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회원이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카드를 해지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연회비를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일할 계산(하루 단위로 계산)하여 그 금액을 차감하여 반환하며, <u>은행</u>은 카드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날까지의 채무 전액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</li> </ul>	<p>문구 수정</p> <p>문구 수정</p> <p>문구 수정</p> <p>문구 수정</p>

현행	개정(안)	비고
<p>6. 신용카드 이용의 제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<u>카드사</u>는 회원 및 가맹점의 신용도, 법령 규정, 감독기관의 지시 등을 고려하여 회원의 특정가맹점(국내 및 해외가맹점 포함)에 대한 카드이용 또는 이용한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.</li> </ul> <p>(생략)</p>	<p>6. 신용카드 이용의 제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<u>은행</u>은 회원 및 가맹점의 신용도, 법령 규정, 감독기관의 지시 등을 고려하여 회원의 특정가맹점(국내 및 해외가맹점 포함)에 대한 카드이용 또는 이용한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.</li> </ul> <p>(현행과 같음)</p>	문구 수정
<p>7. 신용점수에 미치는 영향 (생략)</p>	<p>7. 신용점수에 미치는 영향 (현행과 같음)</p>	
<p>8. 이용대금 결제일 전 이용대금 상환이 필요한 경우</p> <p>(생략)</p>	<p>8. 이용대금 결제일 전 이용대금 상환이 필요한 경우</p> <p>(현행과 같음)</p>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<u>카드사</u>로부터 별도 청구가 없더라도 모든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대금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즉시 상환하셔야 합니다.</li> </ul> <p>(생략)</p> <p>(참고) 주요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신용카드 거래와 관련하여 허위, 위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제출하여 <u>카드사</u>의 채권보전에 중대한 손실을 유발한 때</li> </ul> <p>(생략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<u>은행</u>으로부터 별도 청구가 없더라도 모든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대금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즉시 상환하셔야 합니다.</li> </ul> <p>(현행과 같음)</p> <p>(참고) 주요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신용카드 거래와 관련하여 허위, 위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제출하여 <u>은행</u>의 채권보전에 중대한 손실을 유발한 때</li> </ul> <p>(현행과 같음)</p>	문구 수정
<p>9.~12. 자료 열람 요구권 (생략)</p>	<p>9.~12. 자료 열람 요구권 (현행과 같음)</p>	
<p>13. 신용카드 해지 신청 안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해지 신청 : 회원은 인터넷 홈페이지, <u>카드사</u> 앱, 콜센터를 통해 신용카드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</li> </ul>	<p>13. 신용카드 해지 신청 안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해지 신청 : 회원은 인터넷 홈페이지, <u>은행</u> 앱, 콜센터를 통해 신용카드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</li> </ul>	문구 수정

현행	개정(안)	비고
<p>· [인터넷] 제주은행 홈페이지(<a href="http://www.e-jejubank.com">www.e-jejubank.com</a>)  접속 &lt;신 설&gt; &gt; 조회 &gt; 카드 &gt; 해지할 카드 오른쪽 [더보기]  클릭 &gt; [신용카드(체크카드) 카드 해지] 클릭 &gt; 해지시 유의사항 확인 &gt; 해지 신청 내용 확인 &gt; 카드 비밀번호 입력 &gt; 보안매체 암호 입력 후 카드 해지 완료</p> <p>· [앱] 제주은행 앱(J Bank) 실행 &lt;신 설&gt; &gt; 메뉴 &gt; 카드 &gt; 내카드 관리 &gt; 해지할 카드 선택 &gt; [카드해지] 클릭 &gt; 보안매체 암호 입력 후 카드해지 완료  (생략)</p> <p>· [콜센터] (생략)  ☞ 콜센터를 통한 신용카드 해지신청은 &lt;신 설&gt; 9시~18시까지 가능</p> <p>14. 개인 신용평가 대응권(개인차주와 관련된 설명)  (생략)</p> <p>&lt;신 설&gt;</p>	<p>· [인터넷] 제주은행 홈페이지(<a href="http://www.e-jejubank.com">www.e-jejubank.com</a>)  접속 <u>및 로그인(인증서)</u> &gt; 조회 &gt; 카드 &gt; 해지할 카드 오른쪽 [더보기] 클릭 &gt; [신용카드(체크카드) 카드 해지] 클릭 &gt; 해지시 유의사항 확인 &gt; 해지 신청 내용 확인 &gt; 카드 비밀번호 입력 &gt; 보안매체 암호 입력 후 카드 해지 완료</p> <p>· [앱] 제주은행 앱(J Bank) 실행 <u>및 로그인</u> &gt; 메뉴 &gt; 카드 &gt; 내카드 관리 &gt; 해지할 카드 선택 &gt; [카드해지] 클릭 &gt; 보안매체 암호 입력 후 카드해지 완료  (현행과 같음)</p> <p>· [콜센터] (현행과 같음)  ☞ 콜센터를 통한 신용카드 해지신청은 <u>은행 영업일 기준</u> 9시~18시까지 가능</p> <p>14. 개인 신용평가 대응권(<u>개인차주와 관련된 설명</u>) 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15. 현금서비스 금리인하요구권</u></p> <p>· <u>채무자인 고객은 「여전법」제50조의13(금리인하 요구)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(예: 취업, 승진, 재산증가, 개인신용평점 상승)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</u></p> <p><u>단,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의 행사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u></p>	<p>절차 추가</p> <p>절차 추가</p> <p>해지 가능 시점 구체화</p> <p>문구 삭제</p> <p>항목 이동  (질의 항목에서 설명서 항목으로 포함)</p>

현행	개정(안)	비고
<p>※ 고객의 이해여부 확인을 위한 질의</p> <p>1. 현금서비스 이용시 금리인하 요구권의 대상임을 확인하셨습니까? <input type="checkbox"/> 대상 <input type="checkbox"/> 비대상</p> <p><u>채무자인 고객은 「여전법」제50조의13(금리인하 요구)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(예: 취업, 승진, 재산증가, 개인신용평점 상승)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</u></p> <p><u>단,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의 행사 대상에서 제외되오니, 상단의 체크박스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u></p>	<p><u>· 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 방문 및 고객센터(1588-0079)를 통해 신청 가능(신청시기,횟수제한 없음) 합니다.</u></p> <p><u>· 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심사 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</u></p> <p><u>·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'10영업일 이내'(고객에게 자료를 보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)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전화, 서면, 문자메세지, 전자우편, 팩스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합니다.</u></p> <p>※ 고객의 이해여부 확인을 위한 질의</p> <p>1. 현금서비스 이용시 금리인하 요구권의 대상임을 확인하셨습니까? <input type="checkbox"/> 대상 <input type="checkbox"/> 비대상</p> <p><del><u>채무자인 고객은 「여전법」제50조의13(금리인하 요구)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(예: 취업, 승진, 재산증가, 개인신용평점 상승)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</u></del></p> <p><del><u>단,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의 행사 대상에서 제외되오니, 상단의 체크박스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u></del></p>	<p>항목 이동 (질의 항목에서 설명서 항목으로 포함)</p> <p>설명내용 이동(설명서 항목으로 포함)</p>

현행	개정(안)	비고
<p>· <u>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 방문 및 고객센터(1588-0079)를 통해 신청 가능(신청시기, 횟수제한 없음) 합니다.</u></p> <p>· <u>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심사 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</u></p> <p>· <u>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'10영업일 이내'(고객에게 자료를 보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)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전화, 서면, 문자메세지, 전자우편, 팩스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합니다.</u></p> <p>(이하 생략)</p>	<p><del>· <u>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 방문 및 고객센터(1588-0079)를 통해 신청 가능(신청시기, 횟수제한 없음) 합니다.</u></del></p> <p><del>· <u>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심사 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</u></del></p> <p><del>· <u>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'10영업일 이내'(고객에게 자료를 보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)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전화, 서면, 문자메세지, 전자우편, 팩스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합니다.</u></del></p> <p>(이하 현행과 같음)</p>	<p>설명내용 이동(설명서 항목으로 포함)</p>